

Vol. 4

2026.4.15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2

F. 02-545-539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안만복부대표 mbahn@hjcustoms.co.kr

통관 요건 물류사업부 박주경부대표 jpark@hjcustoms.co.kr

통관 통합 운영사업부 정혜지선임 hjjeong1@hjcustoms.co.kr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조세심판사례
-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 I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	-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	-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	-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3) 시행일

2026.4.1

I. 법령 개정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에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22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 와이즈테크 글로벌 피티와이 리미티드(WiseTech Global Pty Limited)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수료	- 사전심사를 위해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의 경우: 신청 물품당 3만원 - 그 외의 경우: 무료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기존) HS 2017 기준 - (개정) HS 2022 기준

(3) 시행일

2026.3.20

I. 법령 개정사항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함으로써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항에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불공정 수입 철강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고 수입 철강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추가) 철강 관련 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시행일

2026.3.17

I. 법령 개정사항

4.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HSK 제 9001.10-0000 호에 해당하는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① 유리 용접물을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굵어, 클래딩 및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된 것일 것 ②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의 단일모드 광섬유 규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일 것 가. G.652.A 나. G.652.B 다. G.652.C 라. G.652.D(Low Loss 제품은 제외한다) 마. G.657.A1 바. G.657.A2 ③ 광섬유 다발 및 광섬유 케이블이 아닐 것
공급국	중국

구분	내용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1. 헝통(Hengtong Optic-Electric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3.35
	2. 양쯔(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3.35
	3. 진썩통(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3.35
	5. 그 밖의 공급자	43.35

(3) 시행일

2026.3.19

I. 법령 개정사항

5.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물품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 HSK 제 7411.10-0000 호 - 외경 66.68 mm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mm 이상 2.50 mm 이하 -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	
공급국	태국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공급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1. 홍콩 하이량(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과 그 관계사	3.64
	2. 파인 메탈(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사	8.41
	5. 그 밖의 공급자	3.64
부과기간	2026. 3. 30. ~ 2026. 7. 29. (4 개월)	

(3) 시행일

2026.3.30

II.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1) 주요 내용

-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하드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데이터베이스 머신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30조(제1방법)에 따라 수입신고함
- 나. 처분청은 관세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지배구조상 특수관계에 있고 수입가격이 본사 글로벌 가격정책 및 목표이익률 관리에 따라 결정되며 쟁점물품 부문에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등을 근거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함
- 다. 청구법인은 수입대금 외에 하드웨어 지원비용(HSF)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해당 금액이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고 목표 영업이익률 조정을 위한 요소로 활용되며 물품 판매와 분리되지 않고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입물품의 대가 일부로 판단함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제2~제5방법 적용이 곤란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5조(제6방법)를 적용하고, HSF 중 쟁점물품 관련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함
- 마.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은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특수관계 영향이 없고 HSF는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비로서 수입 이후 비용(공제요소)에 해당하며 과세근거 및 가산금액 산정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수입가격이 본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관리되는 등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또한 HSF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 내역이나 비용 산출 근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물품의 대가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6방법을 적용하여 HSF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하며,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3) 결정일

2026.3.16 (조심 2025관0060)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mall red beans, froze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Small red bean, frozen; 당통팥(냉동)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알상의 삶은 팥을 설탕액에 침지한 후 냉동한 것(총당 25.8%) - 용도: 팥시럽 가공용 및 아이스크림 원료용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제 0710.22-0000 호 (기본세율 27%) - 변경 후 : 제 2004.90-9000 호 (기본세율 30%)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 2004.90-900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2. Emulato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Measurement System ; VR5 CHANNEL EMULATOR (VR5-SYS-MOTAA8C)
	Fading Simulator ; MF6900A
물품 설명	- 통신장비 측정기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에뮬레이터
HS CODE	- 변경 전 : 제 9030.40-9000 호 (WTO 세율 0%) - 변경 후 : 제 8543.70-909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제 8543.70-909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3. Speak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LOUD SPEAKER; P21-752941(94100-S1000)
물품 설명	- 자동차 크래시패드 내부에 장착되며 클러스터 제 어기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음원을 재생하는 기기
HS CODE	- 변경 전 : 제 8512.30-0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518.29-9000 호 (WTO 세율 0%)
변경 사유	-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제 8518.29-900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4. Suscep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200MM SUSCEPTOR HOLDER, ASM TOP+ BOTTOM RING KIT; EPILON2000
물품 설명	- 웨이퍼 EPI growing 진행시 웨이퍼가 안착되어 회전판 역할을 하는 탄화규소(SiC)로 코팅된 흑연제 디스크상 ①Susceptor와 이를 둘러싸는 부분으로 탄화규소로 코팅된 흑연제 ②Bottom 및 ③Top ring으로 구성된 kit
HS CODE	- 변경 전 : 제 6903.10-9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86.90-2040 호 (기본세율 0%)
변경 사유	-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용 기계의 부품에 해당하므로 제 8486.90- 204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5. Diff Ass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DIFF ASSY; 97R31-00010
물품 설명	- SIDE GEAR·PINION GEAR·PINION SHAFT·CASE 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전동 지게차용의 차동장치에 장착되어 차량 선회시 편측 휠의 회전수를 가감시켜 부드러운 선회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HS CODE	- 변경 전 : 제 8483.40-901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8483.40-909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 기어링에 해당하므로 제 8483.40-909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6.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 g/m ² but not more than 150 g/m ² ; Filter 절곡여지
	Nonwoven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R.KOREA
물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70%)와 폴리프로필렌(PP)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부직포(30%)를 적층한 시트를 약 22mm의 폭으로 절곡하여 'WWW' 형태로 만든 것 (1 제곱미터당 중량 : 100g) -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2겹 내부에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로 만든 부직포 1겹을 접착하여 적층한 시트상[1 제곱미터당 중량 : 약 140그램, 제시규격 : 폭 1,160mm]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전 : 제 5603.14-9000 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 제 5603.13-9000 호 (기본세율 8%)
변경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이므로 제 5603.13-9000 호에 분류 - (2026년 제 1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시행일

2026.3.4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위조화장품 대응 관련 기관별 정책 방향, 지원 사업 등 설명
-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으로 브랜드 신뢰도와 소비자 안전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이하 지재처),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누리꿈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3월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액(증가율): ('23)84.6억 달러 → ('24)101.8억 달러(+20.3%) → ('25)114.3억 달러(+12.3%)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중 10%가 화장품 (9.7억 달러, 1.1조원)추산

식약처, 지재처, 관세청은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하여 위조 화장품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정책 방향,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은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함과 동시에 그간 K-화장품 기업이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을 훼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인 K-뷰티 수출기업의 위조상품이 국내 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LOW-K*」 수출지원 추진과 함께 해외 관세당국과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장벽해소(Globalization), 수입국 맞춤형 지원(Local Fit),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Online Export), 수출 판로 확대(Widening Channel), K-브랜드 보호(K-Brand Protection)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협력체계 운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화장품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성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

- 한미 전략적 투자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
- 공사·기금 설치, 하위법령안 마련 신속 착수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적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

아울러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적투자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 '한미전략적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이다.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적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영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한미전략적투자공사에 한미전략적투자기금을 설치한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 통과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 시행일(공포 후 3개월 후)까지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민반의 준비를 할 계획이다.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공포 직후 신속히 출범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EU CBAM... 기업 대응 분주

- 세칙 발표한 EU, 2년 후에는 적용대상 '다운스트림'까지 확대
- 정부·유관기관, 대상기업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지원에 박차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대응 준비가 분주하다.

CBAM '청구서'는 수입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부터 날아오기에,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년 후 대상품목 확대가 예정돼 있어 해당 산업 관련 기업들의 신규 대응도 필요하다.

CBAM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조치로,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등 6개 분야에 적용된다. 그러나 2028년부터는 '다운스트림', 즉 철강과 알루미늄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 180개 하류 산업 제품들로 규제가 확대된다. 자동차나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이 이에 포함된다.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와 중고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 신차가 포함된다. 부품의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채시·차체·기어박스·휠 등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지정됐다.

산업기계의 경우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이 포함되며, 크레인이나 지게차 같은 건설·하역 기계와 그 부분품도 대상이다. 전기기계의 경우 모든 제품이 아닌, 특정 출력 구간의 모터와 전력용 변압기, 절연 전선 등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가전 분야는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조기는 산업용 대형 제품이 아닌 1회 건조 용량이 10kg 이하인 가정용 제품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가구·의료기기·방열기 등 일부 품목에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경우도 규제 적용대상에 올랐다.

이에 관세청은 2028년부터 CBAM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들에 대해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FTA-PASS)에도 탄소배출량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최근 EU 집행위는 과도한 규제에 인한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반영해 규제의 이행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환경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미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흐름 속에서 'CBAM 간소화 규정'을 발표해 운영 절차, 신고 방식, 예외 적용 등을 완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EU는 2028년 이후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규제 대상이 원자재 중심에서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중소기업 비중이 큰 하류 산업에서도 CBAM 비용 부담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영향이 큰 기업들에 대해 맞춤 지원이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CBAM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배출량 감축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선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CBAM 시행에 따른 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기업 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기존 3시간이었던 것을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다운스트림) 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33회 운영된다.

수출 유관기관들도 CBAM 시행으로 인한 기업 애로 지원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환경규제 대상기업 여부 확인 등 진단사업을 이달 개시할 예정이며, 오는 5월 모집 예정인 맞춤형 컨설팅 사업도 준비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다운스트림 업계 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미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을 개시했으며, 기업에 탄소배출량 자동 산정과 실시간 관리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올봄 중 참가기업 모집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BAM 대응의 경우 이미 긴급지원 수출바우처를 통해 배출량 산정과 사전 검증 비용 보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바우처는 연중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투자비용과 제조공장 환경관리설비 개선 및 설치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개시했다. 이 밖에도 ▷배출량 산정·신고 관련 컨설팅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올봄 중 접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우리 기업들의 탄소감축 설비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과 배출량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가기업을 내달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컨소시엄 주관사의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기술 및 시설 도입 비용 지원사업을 접수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향후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중이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관세청, 덤프행위 차단체계 본격 가동

- 불공정무역 전담조직 신설, 정기 덤프심사 도입 등 상시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정기 덤프심사체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프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프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덤프 조사 건수(건): '20(5)→'21(6)→'22(6)→'23(8)→'24(10)→'25(13)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프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 전국 주요 세관(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에 총 4개의 전담팀 구성('25.12.30.)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프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 덤프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25.12월 말 기준 열간압연 후판제품, 석유수지, 폴리아미드 필름, 백시멘트 등 28개 품목

또한,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프방지관세 부과 전후의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덤프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시행)

**우회덤핑 범위 확대: 공급국 내에서 경미한 변경('25.1.1.) ⇒ 공급국·제3국·국내(보세구역)에서 경미한 변경, 제3국에서 조립·완성 등('26.1.1.시행)

아울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덤프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프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덤프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